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 정원 감축 시 협의 의무화〉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5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 감축 시 주무 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안 제51조의3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5.

다. 회 부 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고용보조금의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여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후 정원 및 인원을 조정하며 혁신도시로부터 인원이 유출됨에 따라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 감축 시 주무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안 제51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전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협의 -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 본사 또는 사무소 및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조직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함 -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부는 2003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을 발표¹⁾하였으며, 2005년에 10개 혁신도시를 선정하였고, 2025년 현재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총 10개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음. 또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시행되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²⁾에 따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른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또는 사무소 등의 조직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한 것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³⁾에서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 감소 시 이에 대한 지원,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및 수당 지급, 주택우선공급권 부여,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융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나 사무소의 조직의 정원을 줄이고 수도권에 소재한 분점이나 사무소 등의 정원을 늘리는 경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정책 취지를 우회하고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이전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이전을 사유로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우회하여 본사 조직의 정원을 축소하고 타 지역 소재 사무소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또는 사무소 등의 조직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준수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이전 혜택을 받고도 이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공공기관 전체 정원이 아닌 본사, 사무소 등 일부 조직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조⁴⁾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타공공기관 역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⁵⁾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이처럼 현재에도 공공기관 전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 주무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더하여 혁신도시 내의 본사나 일부 사무소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율적 경영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

-
-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6조(증원의 절차)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중장기 경영목표, 업무소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3년 단위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정원조정안을 매년 5월 말까지 수립하고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인력의 재배치계획을 정원조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증원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증원 인력의 직급을 함께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령 제·개정, 정책상황의 변경 등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정원 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⑤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항 및 제4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6조의2(증원의 절차) 기타공공기관은 증원의 절차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 6) 기획재정부는 기관 내 부서별 정원까지 사전통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운영 보장 방향성과 배치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협의)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공공기관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 본사 또는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57